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학술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2022-2023

大韓民國學術院



大韓民國學術院

06579 서울특별시 瑞草區 盤浦大路 37길 59

電話 : 3400-5250, FAX : 535-8836 <http://www.nas.go.kr>



대한민국학술원 전경

CONTENTS

I. 概況

| | |
|---------|---|
| 1. 設立目的 | 4 |
| 2. 機能 | 4 |
| 3. 主要沿革 | 4 |

II. 組織

| | |
|---------------|---|
| 1. 機構表 | 5 |
| 2. 機能 | 6 |
| 3. 會員 選出 및 禮遇 | 7 |
| 4. 學術院事務局 | 7 |

III. 會員 現況

| | |
|---------|----|
| 1. 會長團 | 8 |
| 2. 歷代會長 | 8 |
| 3. 任員 | 9 |
| 4. 會員 | 10 |
| 5. 名譽會員 | 15 |

IV. 主要活動

| | |
|------------------------|----|
| 1. 大韓民國學術院賞 | 16 |
| 2. 學術세미나 | 16 |
| 3. 國際學術大會 | 16 |
| 4. 韓·日 學術포럼 | 16 |
| 5. 學術研究 | 17 |
| 6. 學術交流 | 17 |
| 7.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支援 | 18 |
| 8. 學術資料 發刊 | 18 |

V. 大韓民國學術院法

19

I. 概況

1. 設立目的

大韓民國學術院은 學術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學者를 優待·支援하고 學術研究와 그 支援事業을 行함으로써 學術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2.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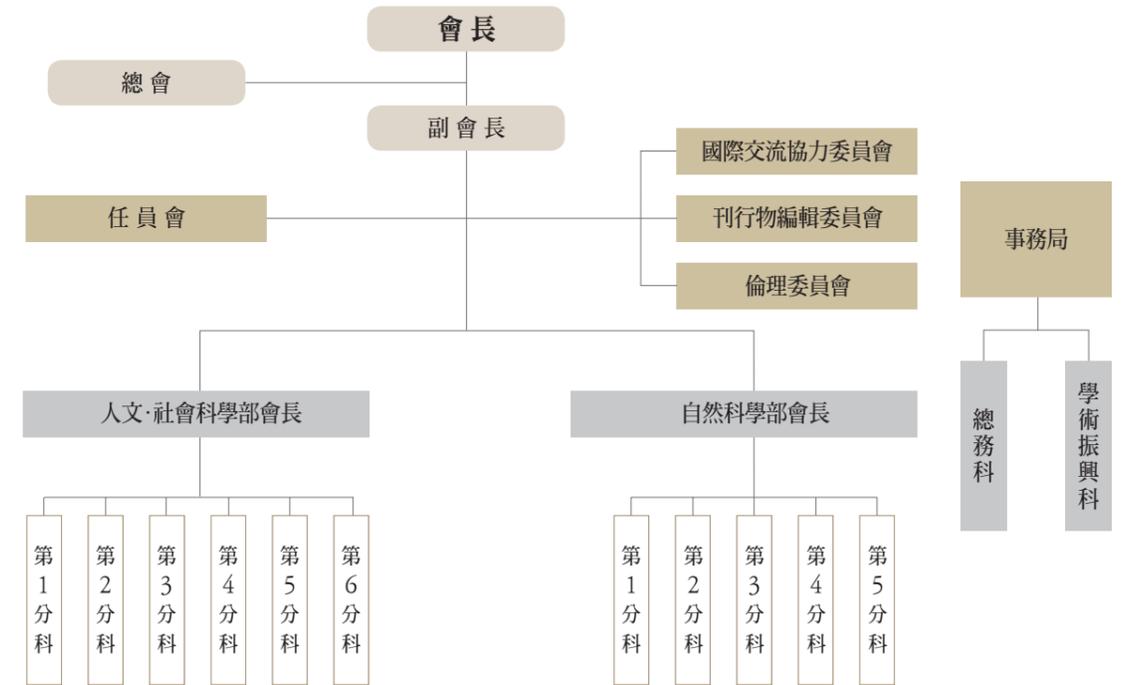
- 國家의 學術振興에 관한 政策 諮問 및 建議
- 學術研究와 그 支援
- 國內·外 學術交流 및 學術行事 開催
- 學術院賞 授與
- 기타 學術振興에 관한 事項

3. 主要沿革

- 1952. 8. 7. 文化保護法 制定·公布(大韓民國學術院 設立根據)
(法律 第248號, 會員定員 80人)
- 1954. 7. 17. 大韓民國學術院 開院(尹日善 博士 初代會長 就任)
- 1955. 7. 17. 第1回 大韓民國學術院賞 施賞
- 1960. 2. 3. 文化保護法 改正(會員定員 80人 → 100人)
- 1960. 5. 4. 第1回 國際學術大會 開催
- 1986. 4. 16. 財團法人 學術院研究財團 設立
- 1987. 10. 15. 廳舍 新築 移轉(景福宮 → 盤浦大路 37길 59)
- 1988. 12. 31. 大韓民國學術院法 制定 公布
(法律 第405號, 會員定員 100人 → 150人)
- 2002. 4. 20.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支援 始作
- 2002. 12. 5. 大韓民國學術院法 改正(名譽會員制 導入)
- 2006. 9. 20. 第1回 韓·日 學術포럼 開催
- 2011. 6. 7. 大韓民國學術院法 改正(平生會員制 導入)
- 2014. 5. 14. 大韓民國學術院 開院 60週年 記念式
- 2021. 4. 1. 第39代 李長茂 會長 就任

II. 組織

1. 機構表



[分科別 專攻分野 및 定數]

(2022.3.)

| 部別 | 分科別 | 專攻分野 | 會員 | | 名譽會員 |
|----------|------|--|-----|-----|------|
| | | | 定員 | 現員 | |
| 人文·社會科學部 | 第1分科 | 哲學, 倫理學, 論理學, 美學, 宗教學, 教育學, 心理學 | 13 | 11 | |
| | 第2分科 | 語文學 | 13 | 12 | |
| | 第3分科 | 史學, 考古學, 民俗學, 地理學, 文化人類學 | 13 | 12 | 1 |
| | 第4分科 | 法學 | 12 | 11 | 2 |
| | 第5分科 | 政治學, 行政學, 社會學 | 12 | 12 | 1 |
| | 第6分科 | 經濟學, 經營學 | 12 | 10 | |
| | 小計 | | | 75 | 68 |
| 自然科學部 | 第1分科 | 數學, 物理學, 化學, 天文學, 大氣科學 | 15 | 14 | 2 |
| | 第2分科 | 生物學, 地質科學, 生命科學, 營養學, 家政學 | 15 | 15 | 1 |
| | 第3分科 | 建築工學, 金屬工學, 機械工學, 纖維工學, 資源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情報工學, 造船工學, 土木工程, 航空工學 | 15 | 15 | 1 |
| | 第4分科 | 醫學, 齒醫學, 獸醫學, 藥學 | 15 | 14 | |
| | 第5分科 | 農學, 林學, 畜產學, 水產學 | 15 | 13 | 1 |
| | 小計 | | | 75 | 71 |
| 合計 | | | 150 | 139 | 9 |

2. 機能

■ 總會

總會는 大韓民國學術院의 會員 모두가 參與하는 最高議決機關이며, 會員·名譽會員의 選出 承認, 學術院賞 受賞者 認准, 學術院 會長·副會長 選出, 諸規程의 制·改正 등 學術院 運營에 필요한 主要事項을 審議·議決한다. 總會는 每年 3월과 7월에 開催하고, 그 밖에 特別히 處理하여야 할 事項이 있는 境遇에도 開催한다.

■ 部會

部會는 人文·社會科學部會와 自然科學部會가 있으며, 部會에서는 會員·名譽會員 候補者 選出과 部門別 學術院賞 受賞者 選定, 部會長 互選 등을 한다.

■ 分科會

大韓民國學術院의 會員은 專攻에 따라 分科會에 所屬되어 活動하며, 人文·社會科學部에 6個 分科, 自然科學部에 5個 分科 등 總 11個 分科가 設置되어 있다. 分科會는 1년에 7回 開催되며 會員·名譽會員 候補者 資格 審査, 學術院賞 豫備審査, 會員의 學術研究 發表와 討論 등을 한다.

■ 任員會

任員會는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11人的 分科會長으로 構成되며,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과 總會에 附議하여야 할 事項, 그 밖에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審議 또는 議決한다. 會長과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되고 任期는 2年(1回 連任 可能)이며, 部會長은 部會에서 選出되고 任期는 1年이고, 分科會長은 分科會에서 互選하며 任期는 1年이다.

■ 國際交流協力委員會

大韓民國學術院이 加入한 國際學術機構에 관한 業務를 處理하고, 學術에 관한 國際協力業務와 國際的인 學術賞에 관한 情報 및 資料 蒐集 등 學術院 國際交流活動 全般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委員會는 副會長, 部會長 등 3人的 當然職 委員과 各 分科에서 委囑된 11人的 委員으로 구성한다.

■ 刊行物編輯委員會

大韓民國學術院이 發刊하는 刊行物의 基本計劃의 樹立, 執筆者 委囑, 原稿審査, 기타 編輯에 관한 事項 등을 審査·決定한다. 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人文·社會科學部會長, 自然科學部會長과 各 分科에서 選定된 委員 11人으로 構成한다.

■ 倫理委員會

學術院 會員으로서의 名譽와 品位를 損傷시킨 會員에 대한 措置方案을 審議·議決한다. 委員會는 副會長 및 各 分科에서 選定된 會員 11人으로 構成한다.

3. 會員 選出 및 禮遇

■ 會員

- 選出 : 會員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高等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이와 同等 以上の 學校를 卒業하고 學術研究 經歷이 20年 以上인 者 또는 學術研究 經歷이 30年 以上인 者로서 學術發展에 顯著的한 功績이 있는 者 중에서 學術院 會員 또는 學術院이 指定하는 該當分野 學術團體의 推薦을 받아 會員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該當 部會에서 會員候補者를 決定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出되며, 任期는 卞生으로 한다.
- 禮遇 : 國家는 會員을 優待하고 그 學識과 經驗을 活用할 수 있도록 學術研究 活動費, 會議參席 手當, 每月 定額의 手當 등을 支給한다.

■ 名譽會員

- 選出 : 名譽會員은 學術研究 實績이 卓越하여 國際的으로 認定을 받고 우리나라의 學術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外國人 중에서 學術院 會員 또는 學術院이 指定하는 學術團體의 推薦을 받아 分科會 및 名譽會員審査委員會 審査를 거쳐 該當 部會에서 議決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任되며 任期는 4年이고 連任할 수 있다.
- 禮遇 : 名譽會員이 會議 또는 行事に 參席하거나 研究 등을 遂行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旅費 등을 支給 할 수 있다.

4. 學術院事務局

大韓民國學術院의 事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教育部 所屬으로 學術院事務局을 두고 있다. 學術院事務局에는 總務課와 學術振興課를 두고 있으며 公務員 定員은 事務局長(高位公務員) 등 17人이다.

III. 會員 現況

1. 會長團



李長茂
(會長)



李正馥
(副會長)



任敦姬
(人文·社會科學部會長)



朴聖炫
(自然科學部會長)

2. 歷代會長



尹日善
(1~6代, 1954~1960)



李丙燾
(7~17代, 1960~1981)



申泰煥
(18代, 1981~1983)



沈鍾燮
(19~21代, 1983~1988)



徐燉珏
(22~23代, 1988~1992)



權彝赫
(24~25代, 1992~1996)



李賢宰
(26~27代, 1996~2000)



李鎬汪
(28~29代, 2000~2004)



金泰吉
(30~31代, 2004~2008)



金商周
(32~33代, 2008~2012)



朴煥植
(34代, 2012~2013)



權肅一
(35~36代, 2014~2018)



金東基
(37~38代, 2018~2020)

3. 任員

● 會長：李長茂 (機械力學)
副會長：李正馥 (韓國政治)

● 人文·社會科學部會長：任敦姬 (民俗學)
第1分科會長：李漢龜 (英美哲學)
第2分科會長：張敬烈 (英文學)
第3分科會長：金浩東 (中央아시아史)
第4分科會長：金孝全 (憲法學)
第5分科會長：金弘宇 (政治思想)
第6分科會長：金基永 (經營學)

● 自然科學部會長：朴聖炫 (統計學)
第1分科會長：李鎬仁 (應用化學)
第2分科會長：金相九 (植物分子遺傳學)
第3分科會長：劉丁烈 (流體力學)
第4分科會長：李榮純 (獸醫病理學)
第5分科會長：朴承禹 (農工學)



4. 會員

[第1分科] 哲學, 倫理學, 論理學, 美學, 宗教學, 教育學, 心理學



曹大京
(心理學)



鄭鎮弘
(宗教學)



車載浩
(社會心理學)



吳昞南
(美學)



李敦熙
(教育哲學)



李星珍
(教育心理學)



吉熙星
(佛教哲學)



蘇光熙
(西洋哲學)



尹絲淳
(東洋哲學)



李漢龜
(英美哲學)



朴琮炫
(西洋古代哲學)

[第2分科] 語文學



金完鎮
(國語學)



張爽鎮
(言語學)



李京植
(英文學)



趙東一
(韓國古典文學)



홍재성
(불어학)



金學主
(中國文學)



李廷玟
(言語學)



金秀勇
(獨文學)



曹主冠
(露文學)



張敬烈
(英文學)



南基心
(國語學)



金仁煥
(韓國現代文學)

[第3分科] 史學, 考古學, 民俗學, 地理學, 文化人類學



車河淳
(歷史學)



李琦錫
(地理學)



李基東
(韓國史)



金榮漢
(西洋史)



李成珪
(東洋史)



李泰鎭
(韓國史)



韓相福
(文化人類學)



崔秉鉉
(考古學)



任敦姬
(民俗學)



朴龍雲
(韓國史)



金浩東
(中央아시아史)



金永植
(歷史, 科學史)

[第4分科] 法學



金鍾源
(刑法)



高翔龍
(民法)



金南辰
(行政法)



鄭東潤
(商法)



朴秉濠
(韓國法制史, 家族法)



金相容
(民法)



金孝全
(헌법학)



李炯國
(刑事法)



林鍾律
(勞動法)



權五乘
(經濟法)



崔秉祚
(로마法)

人文·社會科學部

[第5分科] 政治學, 行政學, 社會學



[第6分科] 經濟學, 經營學



自然科學部

[第1分科] 數學, 物理學, 化學, 天文學, 大氣科學



[第2分科] 生物學, 地質科學, 스포츠科學, 營養學, 家政學



自然科學部

[第3分科] 建築工學, 金屬工學, 機械工學, 纖維工學, 資源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情報工學, 造船工學, 土木工程學, 航空工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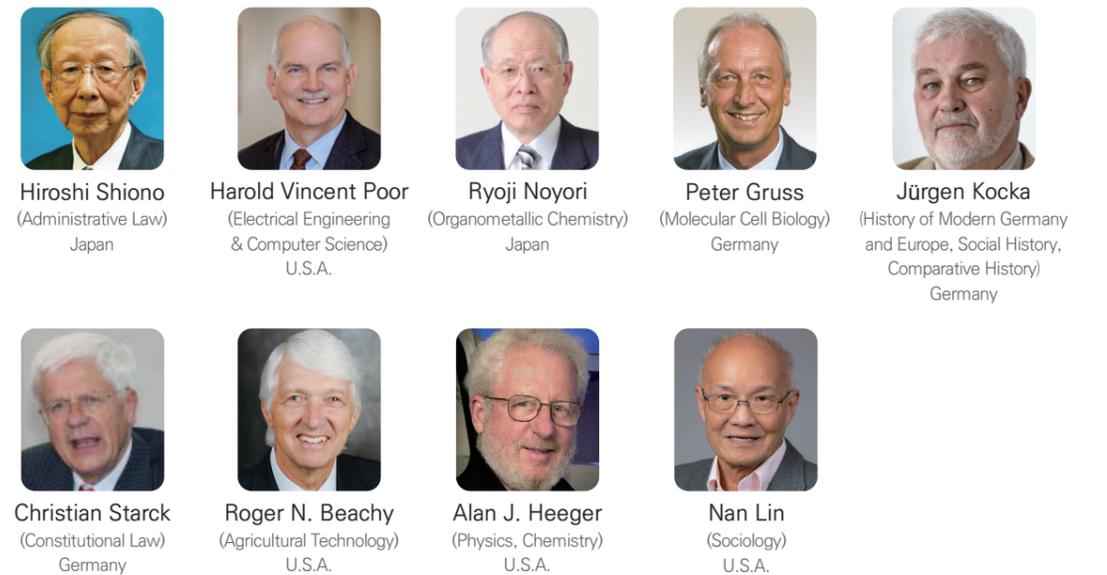
[第4分科] 醫學, 齒醫學, 獸醫學, 藥學



[第5分科] 農學, 林學, 畜產學, 水產學



5. 名譽會員



IV. 主要活動

1. 大韓民國學術院賞

學術院에서는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學術發展에 顯著的 功勞가 있거나 크게 寄與할 것으로 認定된 사람에게 大韓民國學術院賞을 授與함으로써 學問發展에 寄與하고 있다. 學術院賞은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基礎, 自然科學應用 네 部門에서 總 8人 以內的 受賞者를 選定하며, 1955년부터 2021년까지 271人을 施賞하였다. 受賞者에게는 賞狀과 메달, 賞金을 授與한다.



2. 學術세미나

學術院 會員들의 오랜 研究經綸과 뛰어난 學識을 살려 우리나라의 學術發展에 寄與하고자 每年 5月 學術세미나를 開催하고 있다.



3. 國際學術大會

國內外 著名한 學者들을 招請하여 새롭게 擡頭되는 學術課題를 討論하고 未來社會의 學術發展에 寄與하고자 每年 10月 國際學術大會를 開催하고 있다.



4. 韓·日 學術포럼

大韓民國學術院과 日本學士院 間的 相互 理解關係를 增進시키고 學術交流活動을 통해 學問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2006년부터 韓·日 學術포럼을 開催하고 있다.



5. 學術研究

學術院 會員들의 持續的인 學術研究活動을 위하여 會員들의 論文研究 및 著書執筆活動을 支援하고 있다. 論文研究 結果는 學術院論文集에 掲載하고 著書는 學術研究叢書로 發刊하여, 國內·外 學術機關 및 大學 圖書館 등에 配付하고 있다.

6. 學術交流

■ 國際學術機構

學術院은 國際學術機構에 加入하여 代表者를 派遣하고 學術大會에 參席하는 등 活潑한 國際交流活動을 遂行하고 있다. 加入한 國際學術機構數는 總 6개이며, 太平洋科學協會(PSA), 國際學術院聯合(UAI), 國際科學財團(IFS), 國際科學理事會(ISC), 아시아學術會議(SCA), 國際學術院委員會(IAP)이다.

■ 外國學術院과 交流

學術院은 우리나라 學術機關을 代表하여 現在 14個 外國 學術院과의 學術交流 協定을 締結하여 相互 交換訪問, 學術資料 交換 등 學術交流 活動을 活潑히 하고 있다.

| 年度 | 協定締結學術院 |
|------|---|
| 1990 | 이스라엘學術院(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
| 1992 | 프랑스과학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Institut de France) |
| 1993 | 中國科學院(Chinese Academy of Sciences), 中國社會科學院(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美國學術院(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英國王室學會(The Royal Society of London) |
| 1995 | 英國學術院(The British Academy) |
| 1996 | 노르웨이學術院(The Norwegian Academy of Sciences and Letters) |
| 1997 | 스웨덴왕립人文科學院(The Royal Swedish Academy of Letters, History and Antiquities), 몽골 學術院(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
| 1998 | 日本學士院(The Japan Academy) |
| 2010 | 크로아티아學術院(Croat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
| 2012 | 독일 괴팅겐學術院(The Göttingen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
| 2016 | 호주인문學術院(Australian Academy of the Humanities) |

7. 基礎學問育成 優秀學術圖書 選定·支援

學術院은 教育部의 優秀學術圖書 選定·支援 事業을 委託받아 遂行하고 있다. 同 事業은 基礎學問分野 研究 및 著述活動을 活性化하기 위해 2002년부터 推進하였다. 優秀學術圖書는 學術院 會員 및 外部 專門家로 構成된 審査委員會에서 人文學, 社會科學, 韓國學, 自然科學 基礎學問 全分野를 選定하며, 2021년에는 265種의 優秀學術圖書를 選定하여 國內 大學 圖書館에 支援하였다.



8. 學術資料 發刊

學術院은 每年 學術에 관한 資料를 發刊하여 國內·外 學術機關에 配布하고 있다.

- 學術院論文集
- 學術院英文要覽
- 學術研究叢書
- 學術院 國·英文 브로셔
- 學問研究의 動向과 爭点
- 學術院通信 등
- 國際學術交流報告書
- 大韓民國學術院便覽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 ③ 학술원에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